

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 정신에 따라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보다 심오하게 연구·교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관련 전문가와 지도급 관리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9.28.>

제2조(명칭) 대학원의 명칭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6.9.28.>

제3조(설치과정)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며,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과정을 둘 수 있다.

②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, 대학원은 학위과정에서 설치·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교과과정의 공동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7.7.12.>

제4조(학과 및 정원)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, 학과 및 학생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9.1.12.>

② 대학원에는 각 학과별로 전공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수업)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제로 운영한다.

②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별 또는 전공별로 행한다.

제2장 입학

제6조(입학시기)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 재입학의 경우도 같다.

제7조(지원자격)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5.>

1. 석사학위 과정

가. 국내·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한 자 <개정 2014.2.5.>

나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<개정 2014.2.5.>

2. 연구과정 :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

제8조(외국인의 입학자격) ①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할 수 있다.

② 삭제 <2017.7.12.>

제9조(편입학) 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

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정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절차는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준한다. <개정 2014.2.5., 2016.9.28.>

제10조(재입학)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(퇴학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)된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 제적 전 동일과정에 한한다.

제10조의2(전과) ①재학생은 재학년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03.6.24.>

②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의 동의를 얻어 전과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고, 대학원장은 전입학과의 동의를 얻어 전과를 승인할 수 있다.

<신설 2003.6.24.>

③전과에 따른 이수과목의 인정은 전입학과에서 인정한 과목에 한한다. <신설 2003.6.24.>

제11조(직원의 입학)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입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지원절차)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(소정양식)
2. 졸업증명서(다만,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,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 인정서로 한다)
3. 출신대학 학업성적 증명서

제13조(전형방법) ①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과목은 논술고사 및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전형으로 대치할 수 있다.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구술시험만을 과할 수 있다.

②대학원의 연구과정 입학전형은 구술시험으로 한다.

제3장 수업, 학점, 시험 및 학위수여

제14조(수업연한)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(4학기),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4.2.5.>

제15조(재학연한) ①대학원의 재학연한은 10년(20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병역의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7.8.24.>

②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수업등) ①수업시간과 그 장소는 매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②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실습수업 또는 본교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이수과목)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, 각 학과(전공)별 교과과정은 정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8.1.2., 2016.9.28.>

제18조(학점)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하고,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2학점으로 하되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으로 한다. <개정 2009.12.23., 2014.2.5.>

② 연구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.

③ 교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(매학기 학점) 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 <개정 2009.12.23., 2014.2.5.>

제20조(시험) 시험은 매 학기말 그 시간에 수업한 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.

제21조(학점인정) 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1.2.8.>

②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,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.

④ 사법행정학과 부동산법제 전공자가 경영대학원의 부동산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전공선택과목의 이수로 인정하되 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5.1.20.>

⑤ 인턴십 연구과정은 1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7.7.12.>

⑥ 그 밖에 인턴십 연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7.7.12.>

제22조(성적등급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 급	점 수	평 점
A ⁺	95 - 100	4.5
A	90 - 94	4.0
B ⁺	85 - 89	3.5
B	80 - 84	3.0
C ⁺	75 - 79	2.5
C	70 - 74	2.0
F	69 이하	0

제23조(수료 등)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.

② 대학원의 각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24조(학위신청 자격시험) ① 대학원은 졸업에 앞서 학위신청 자격시험을 실시한다.

다만, 졸업시험을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8.22.>

②학생은 1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1종은 영어이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학생의 전공에 필요한 외국어로 할 수 있다. 이때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.

③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과한다. <개정 2008.1.2.>

④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시험과목, 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제25조(학위논문) ①규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
②학위논문 제출시기,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정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9.28.>

제25조의2(졸업시험) ①졸업시험학점취득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32학점(단,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)을 취득하여야 하며,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12.23., 2014.2.5.>

②졸업시험 응시자격은 32학점 이상 등록한 자로 하고, 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으로 하되,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과목 중 5개 과목으로 하며,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08.8.22., 2014.2.5.>

③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불합격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. <신설 2003.6.24.>

제26조(학위수여) ①대학원 학위수여 기준 및 학과별 학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1.12.>

가. 학위논문 제출자 :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신청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

나. 추가학점 신청자 :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을 합격한 후 졸업시험을 합격한 자

학 과 명	학 위(전문분야)
일 반 행 정	행정학석사(행정학)
사 법 행 정	법학석사(법무행정) 법학석사(사법실무) 법학석사(형사실무) 법학석사(부동산법제)
의회정치·안보정책	정치학석사(의회정치) 정치학석사(안보통일정책)
사 회 복 지	사회복지학석사(사회복지) 사회복지학석사(상담복지)

<개정 2019.9.16.>

②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.

제4장 등록, 휴학, 복학, 퇴학 및 제적

제27조(등록금) 대학원생은 수업연한동안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5.>

제28조(휴학과 복학) ①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2.5.>

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4.2.5.>

③군 복무 및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2.5.>

④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2.5.>

제29조(제적) ①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퇴학원의 처리는 대학원장을 경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처리한다.

②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

제5장 공개강좌, 위탁생 및 연구생

제30조(공개강좌) ①공개강좌는 교양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③공개강좌의 과목이나 제목, 기간, 수강정원,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.

④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31조(위탁생)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.

제32조(연구생) ①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력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
1. 4년제 대학 졸업자
2.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자 <개정 2014.2.5.>

②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6장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등

제33조(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등) ①총장은 대학원 석사과정 및 공개강좌 과정의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정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28., 2017.5.30.>

②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건학정신이 투철하거나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

제34조(직제 및 교수)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학과별로 학과장과 전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35조(대학원위원회) ①대학원에 정책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9.28.>

②위원회는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⑥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.

제36조(시행세칙)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37조(준용규정)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7호, 1998.10.19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3호, 1998.12.18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73호, 1999.2.19.>

1.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제22조 제2항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36호, 2001.6.27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4호, 2002.4.8.>

이 학칙은 2002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8호, 2002.9.24.>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학칙 발령당시 대학원에 재직 중인 학생은 종전 학칙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288호, 2003.2.28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7호, 2003.6.17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2호, 2003.6.24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3호, 2003.12.24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4조 제1항 및 제26조의 제1항의 개정학칙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42호, 2005.1.20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18호, 2007.8.24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3호, 2008.1.2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8호, 2008.2.29.>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변경학칙 제26조의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453호, 2008.8.22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8호, 2009.1.12.>

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1호, 2009.12.23.>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을 이수 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되 학칙 제19조제2항의 경우 개정학칙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588호, 2011.2.8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7호, 2014.2.5.>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4조의 개정학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

적용한다.

부칙 <제784호, 2015.12.2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3호, 2016.9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당시 위기관리학과와 재적생 및 수료생 등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800호, 2017.5.30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4호, 2017.7.12.>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8호, 2019.9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학칙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9.1.12., 2015.12.2., 2016.9.28.>

정책대학원 학과별 학생 입학정원

과정 별	학 과 별	입 학 정 원
석사학위	일 반 행 정 사 법 행 정 의회정치.안보정책 사 회 복 지	50

정책대학원
석 제 호

학 위 기

성명 :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교 정책대학원 ○○학과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○○ 석사(전문분야)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논문제목 :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장 (학위) 성명 직인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 석사(전문분야)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총장 (학위) 성명 직인

학위등록번호 :